17 감사부 보고

제102회기 감사부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부 장 라상기
서 기 최병철

1. 조 직

1) 임 원 : 부장 라상기, 서기 최병철, 회계 임종환, 총무 남태섭

2) 부 원 : 장재덕 권응화 강대호 이춘복 이민호 조평제 조승호 고석득 황남길 유성모 박춘근 동현명 이은철 태준호

2. 회 의

1) 전체회의

(1) 제1차 전체회의

- 일 시 : 2017. 11. 13(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회원점명을 하니 10명 참석 (4명 위임)하여 성수가 됨으로 개회하기로 하다.
  ② 제2차 감사부 임원회의에서 결의한 총신대학교 특별감사의 건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③ 총신 특별감사 대상은 법인국(총신재단, 운영), 100만 기도후원회를 감사키로 하고 감사 기간은 2017년 11월 20일(월)-21(화) 하기로 하고 감사부 임원 포함 7인으로 하기로 하다.
  ④ 임원을 제외한 특별감사 인원 3인은 임원회에서 선임하기로 하고, 추후 소집 장소는 공문으로 발송하여 통지하기로 하다.
  ⑤ 감사부 워크숍은 임원회에서 결의대로 시행키로 하다. 시행 기간은 2017년 12월 4일(월)-6일(수) (2박 3일) 장소 : 전남영암 삼호현대호텔에서 하기로 하다.
  ⑥ 워크숍에 관한 진행은 감사부 서기 최병철 장로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⑦ 워크숍이나 특별감사의 중요한 건은 부장과 서기에게 위임하여 준비키로 하다.

(2) 제2차 전체회의

- 일 시 : 2018. 1. 16(화)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회의록을 유인물 대로 받기로 하다.
  ② 총회는 총신을 설립한 기관임으로 당연히 총회의 지도와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4회에 걸쳐 감사를 연기한 것은 불법이고, 차후 총신대학교에 공문을 발송시 내용증명 으로 증거를 남겨 대응키로 하고, 총신대학교 감사 거부의 건은 감사부 전체회의 결의를 받아 법적으로 대응키로 하다. 총신대학교 감사(법인국)에 관련된 건은 임원에게 전권을 맡겨

대응하기로 하다.
③ 102회 헌의부, 정치부의 헌의한 변조의 건
1) 전남제일노회와 서광주노회 합병의 건
2) 서경노회가 헌의한 성석교회 관련 복귀청원의 건
위 두 건에 관련하여 조사키로 하고 감사부 임원 및 부원 중 3인을 추가하여 7인으로 구성키로 하다. 두 건에 관련하여 102회 헌의부장과 서기, 정치부장과 서기. 전남제일노회, 서광주노회 합병위원회 전원을 차후 출석키로 하다.
④ 총회임원회의 (유지재단, 특별위원) 결의위반 특별감사 실시의 건은 임원과 3인을 추가하여 감사키로 하다. (총회결의 관련위반) 일정은 임원회에 맡겨 시행키로 하다.

2) 임원회

(1) 제1차 임원회

- 일　　시 : 2017. 10. 19(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제101회기 정기 감사 총회 보고 후 결과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다.
② 감사팀장을 선정하고 임원회서 추천하기로 하다.
1팀장 : 장재덕　목사 / 2팀장 이춘복 목사 / 3팀장 이은철 목사 / 4팀장 태준호 장로
③ 감사규정 1장 2조에 의거 제101회기 감사미실시 기관인 지방 신학교를 감사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하다.
④ 중간감사 기간은 2018년 3월 19일(월) - 23일(금) 5일간 실시 하기로 잠정 결정하기로 하다.
⑤ 정기감사 기간은 2018년 8월 6일(월)-14일(화) 7일간 실시 하기로 잠정 결정하기로 하다.
⑥ 감사 세미나 일정, 장소, 경비 문제는 서기에게 위임하여 차기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⑦ 차기 임원 및 팀장 연석회의는 10월 30일(월)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⑧ 감사부 전체회의는 11월 13일(월)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잠정 결정하기로 하다.

(2) 제2차 임원 및 팀장 연석회의

- 일　　시 : 2017. 10. 30(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 회의록을 서기 최병철 장로가 낭독하고 회의록을 채택하기로 하다.
② 감사부 세미나 지역은 전남 목포로 하기로 하다. 기간:2017년 12월 4일(월)-6(수) (2박 3일)
③ 전문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 감사 전문가를 초빙하기로 하다.
④ 세미나 일정 및 장소 참가인원, 경비등을 전체 회의시 보고하기로 하다.
⑤ 감사부 전체회의는 전 회의 결의대로 11월 13일(월) 오전 11시 실시키로 하다.
⑥ 총신문제는 총회 현안 등을 고려하여 감사부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하고 회의를 통해 특별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준비키로 하다. (감사규정 1장 3조 4항에 의거)
⑦ 중부노회 조사처리건은 총회임원회에서 소위원을 구성하여 조사하고 있음으로 총회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다.
⑧ 기타안건 : 수시감사의 건은 임원회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3) 제3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7. 11. 10(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 회의록을 낭독 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② 총신대학교 특별감사의 건은 시행키로 하고 절차에 따라 특별감사 실시의 건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총회장에게 보고 후 실시키로 하다.
  ③ 총신대학교 특별감사 일정은 잠정적으로 2017년 11월 20일(월)-21(화) 임원포함 7인으로 하기로 하다.
  ④ 감사대상은 법인국(재단, 운영), 백만기도 후원회를 하기로 하다.
  ⑤ 총신대학교에 특별감사 일정(13일(월)) 공문을 발송키로 하다.

(4) 제4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7. 11. 29(수)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총회 감사부 워크숍 추진 계획안을 토의하다.
  주제 : 총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워크숍 예산은 임원과 팀장 주재로 유인물 대로 받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예산은 감사부장, 서기, 총무, 팀장이 충당하여 행사를 진행키로 하다.
  ② 총신특별감사 연기요청의 건은 총회 감사부 에서 강력히 총신 법인국에 감사를 실시키로 통보하기 로 하다.
  ③ 위크숍 순서 배정은 부장과 총무에게 위임하고 워크숍의 전반적인 기획, 회계의 건은 준비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하다.

(5) 제5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7. 12. 26(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총회 감사부에 전달된 전남제일노회와 서광주노회 합병건에 관한 진정서를 검토한 결과 두 노회간의 합병의건은 총회헌법과 규칙에 맞지 않으므로 12월 29일(금) 시행되는 노회합병 예배중지의 건과. 위원회 활동 중지의 건을 총회임원회에 청원키로 하다.
  ② 성석교회(서경노회) 복귀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헌의부 와 정치부에 절차상 하자가 있기에 헌의부장과 서기, 정치부장과 서기를 조사키로 하고 성석교회 복귀위원회 활동을 중지키로 총회임원회에 청원키로 하다.
  ③ 총신대 특별감사 3회 연기의 건은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인정할 수 없으며 최후 통첩하기로 더이상의 연기는 감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전국 노회와 교회에 교단 신문을 통해 학교의 실상을 알리기로 하다.
  ④ 결의 1,2,3 번을 총회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토록 하기로 하고 차기 임원및 팀장 연석회의는 추후 통보키로 하다

(6) 제6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8. 1. 5(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회의록을 받기로 하다.
  ② 전회의록에 누락된 헌의부장 서기, 정치부장 서기, 출석의 건은 1안과 2안 모두 동일하게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다. 출석일자는 1월 19일(금)오전 11시로 하기로 하다.
  ③ 총신대학교 특별 감사의 건은 2018년 1월 16일 오전 11시 감사부 전원이 참석키로 하며 또 다시 감사연기를 하거나 감사 거부를 하면 학교 현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키로 하다. (성명서 발표 현장에 우리 교단관련 언론 전체에게 통보키로 하다)
  ④ 전남제일노회와 서광주 노회 합병의 건은 더 이상 강행해서는 안되기에 다시한번 임원회에 보고 키로 하고 5인 위원회에게 통지키로 하다. 만약 강행할시 감사부에 제보된 자료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키로 하다. (규칙 제3장 9조 23호)
  ⑤ 성석교회건은 차후 다루도록 하다
  ⑥ 한성노회 목양교회건은 감사를 할 것인지 반려 할 것인지 확인하여 추후 통보키로 하다.

(7) 제7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8. 1. 19(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남제일노회, 서광주노회 합병의 건
  합병위원들을 출석시켜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위원들의 출석 거부로 인해 확인할 수가 없음으로 감사부에 제출된 내용을 근거로 총회에 보고키로 하고 결과는 교단지에 공고키로 하다.
  ② 서경노회 성석교회 관련의 건
  헌의부 서기와 총무를 출석시켜 질의한 결과 정치부 부장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녹취록과 동영상 확인 후 그 결과를 추후 보고키로 하고 정치부와 헌의부에 경위서를 제출 하도록 하다.

  ③ 차기 회의 날짜는 2018년 1월 31일(수) 오전 10시 30분에 갖기로 하다. 차기 회에서는 1항과 2항을 회의시 보고하고 또한 총신과 대화 창구를 갖기로 하고 기타 안건은 차기 회의에 논의키로 하다.

(8) 제1차 감사부 7인 특별위원회의

- 일　　시 : 2018. 1. 31(수)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회의록을 받기로 하다.
  ② 전남제일노회 서광주노회 합병의 건
    1) 합병에 관련된 전남제일노회 진정의 건은 양측(노회장, 서기, 또는 관련자들 중 2인을) 출석시켜 경청키로 하고 전남제일노회 서광주노회 합병위원 5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진술을 경청키로 하다.
    2) 만약 합병위원회의 2차 출석 집단 불응시 에는 전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처리키로 하다.

3) 102회 헌의부장과 서기, 102회 정치부 서기와 총무를 출석하여 위 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다.

③ 서경노회 성석교회 관련의 건

1) 성석교회 관련 감사요청의 건은 102회 정치부(서기, 총무), 101회 헌의부 (서기, 총무), 102회 헌의부 (부장, 서기, 총무)의 출석하도록 요청키로 하다.

④ 총신대학교 특별감사, 감사부의 변호사 (로펌) 선임의 건「감사부 전체회의 (2018년 1월 16일)」결의

1) 일　　시 : 2018년 2월 6일(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총신대학교 사당캠퍼스
감 사 대 상 : 법인국, 100만인 후원회　　감　사 : 감사부 임원 포함 7인

2) 감사 공문은 내용증명으로 보내기로 하고, 만약 5차에도 감사 불응시, 감사를 강행키로 하다

⑤ 전남제일노회 서광주노회 합병의 건, 서경노회 성석교회 복귀의 건 특별감사

1) 일시 : 2018년 2월 27일(월)-28일(화)

2) 양일간에 걸쳐 감사대상과 필요한 해당자에게 통보하여 출석키로 하다.

⑥ 총회임원회 특별감사의 건은 2018년 2월 6일(화) 총신대학교 특별 감사시 기타 안건에 논의키로 하다.

(9) 제8차 임원 및 팀장 연석회의

- 일　　시 : 2018. 2. 26(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② 전남제일노회와 서광주노회 합병의 건은 합병 5인 위원회의 모임 후 결과를 듣고 보고서 작성을 하기로 하다.

③ 성석교회(함경노회) 진정의 건은 총회에서 승인한 증경총회장(김선규), 총무(김창수)를 출석토록 하여 확인 후 처리키로 하다. 일정은 추후 정하기로 하다.

④ 정기 감사(중간) 배정의 건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부서 및 팀관계는 부장과 서기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단, 각 기관과 상비부서, 특별위원의 모든 재정과 회의록을 사전에 제출 하도록 한다.

⑤ 지방신학교 감사는 중간감사 후 현장감사로 실시하되 일정과 인원은 추후 통보키로 하다.

⑥ 총회 모든 감사는 규정대로 시행키로 하다.

(10) 제9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8. 5. 21(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② 제102회 재판국원 및 선거관리위원 부적격자 관련의 건은 2018년 6월 5일(화) 오전 11시에 제101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무용 목사, 서기 이종형 목사, 심의분과 분과장 김동관 목사를 출석 요청하여 선출 접법에 대해 질의하기로 하다.

③ 서광주노회 전남제일노회 합병 건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④ 여전도연합회의 건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⑤ 다음 회의는 2018년 6월 5일(화)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11) 제10차 임원 및 팀장 연석회의

- 일　　시 : 2018. 6. 5(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② 제102회 재판국원 및 선거관리위원 부적격자 관련의 건은 심의분과 분과장 김동관 목사가 출석 요청에 응하여 선출 접법에 대해 질의하다.
  ③ 총회인준신학교 감사로 인해 수원신학교를 방문하여 감사하다.
  ④ 다음 회의는 2018년 6월 11일(월) 오전 11시 총회인준신학교 감사를 위해 대신대학교에서 모이기로 하다.

(12) 제11차 임원 및 팀장 연석회의

- 일　　시 : 2018. 6. 5(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총회인준신학교 감사로 인해 대신대학교를 방문하여 감사하다.
  ② 총회인준식학교 감사로 인해 부산신학교를 방문하여 감사하다.
  ③ 다음 회의는 2018년 6월 15일(금) 오전 11시 총회인준신학교 감사를 위해 광주신학교에서 모이기로 하다.

(13) 제12차 임원 및 팀장 연석회의

- 일　　시 : 2018. 6. 15(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총회인준신학교 감사로 인해 광주신학교를 방문하여 감사하다.
  ② 총회인준식학교 감사로 인해 전북신학교를 방문하여 감사하다.
  ③ 다음 회의는 2018년 6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총신대학교 감사를 위해 총회에서 모이기로 하다.

(14) 제13차 임원 및 팀장 연석회의

- 일　　시 : 2018. 6. 21(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② 제102회 재판국원 및 선거관리위원 관련의 건을 심도있게 회의하니 차기 감사부 임원 및 팀장 연석회의에 관련 당사자들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기로 하다.
  ③ 감사부 보고서는 차기 회의에 작성하기로 하다.
  ④ 다음 회의는 2018년 6월 25일(월) 오전 10시 대전새로남교회에 모이기로 하다.

(15) 제14차 임원 및 팀장 연석회의

- 일　　시 : 2018. 6. 21(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2. 제102회 재판국원 및 선거관리위원 관련의 건을 심도있게 회의하니 차기 감사부 임원회 및 팀장 연석회의에 관련 당사자들을 회의 참석 요청하기로 하다.)를 (2. 제102회 재판국원 및 선거관리위원 관련의 건을 심도있게 회의하니 차기 감사부 임원 및 팀장 연석회의에 관련 당사자들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기로 하다.) 로 변경하여 받기로 하다.
  ② 제102회 총회 재판국원 및 선거관리위원 자격미달 진정서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황재열 목사, 최무룡 장로, 전창덕 장로, 김대원 장로, 김영달 장로, 제101회 경일노회 노회장 및 서기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진정서에 대하여 소명하게 하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소명 대상에게는 차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게 하다.
  ③ 다음 회의는 2018년 7월 5일(목)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16) 제15차 임원 및 팀장 연석회의

- 일　　시 : 2018. 7. 17(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② 지난 감사부 제10차 임원 및 팀장 연석회의에 제102회 총회 재판국원 및 선거관리위원 자격미달 진정서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에 대하여 소명키위해 참석하지 못한 김만영 장로, 제101회 선거관리 심의분과 위원 신신우 장로, 이춘만 장로를 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하게 하다.
  ③ 총회 임원회에 제출할 감사부 보고서는 감사부 부장, 서기에게 일임하여 작성토록 하다.

(17) 제16차 임원 및 팀장 연석회의

- 일　　시 : 2018. 7. 23(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② 총회 임원회에 제출할 제102회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제101회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 경일노회 감사부 보고서를 정리하다.
  ③ 제102회 총회 감사(정기) 일정은 부장, 서기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18) 제17차 임원 및 팀장 연석회의

- 일　　시 : 2018. 8. 3(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② 제102회 총회 감사(정기) 세부일정 및 계획을 논의하다.
    1) 2018년 8월 6일(월) : 총회 본부, 산하 속회 및 기관
    2) 2018년 8월 7일(화) : 총회 본부
    3) 2018년 8월 8일(수) : 총회 본부

4) 2018년 8월 9일(목) : 총신대학교, 세계선교회(GMS)
5) 2018년 9월 10일(금) : 세계선교회(GMS)

③ 제102회 총회 재판국원 및 선거관리위원 자격미달 보고서를 작성하다.
④ 차기회의는 제102회 총회 감사(정기)일자인 2018년 8월 6일(월) 오전 10시에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19) 제18차 임원 및 팀장 연석회의

- 일　　시 : 2018. 8. 14(화)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② 제102회 총회 재판국원 및 선거관리위원 자격미달 진정서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소명키위해 제101회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이종형 목사, 심의분과장 김동관 목사, 심의분과위원 신신우 장로, 이춘만 장로, 경일노회 노회장, 선병인 목사, 박형언 장로, 최무룡 장로, 제102회 재판국장 허은 목사, 재판국원 정진석 장로, 전창덕 장로, 지동빈 장로, 전남제일노회 노갑춘 목사, 박민규 장로, 를 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하게 하다.
③ 제102회 총회 재판국원 및 선거관리위원 자격미달 보고서를 작성하다.
④ 차기회의는 2018년 8월 21일(월) 오후 3시에 광주중심교회에서 모이기로 하다.

(20) 제19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8. 8. 21(월) 15:00 ~ 22일(화) 15:00
- 장　　소 : 광주중심교회
- 결의사항

① 제102회 총회 감사(정기) 미진부서 및 특별감사 대상 부서를 감사하다.
② 미진부서 및 특별감사 대상 부서를 감사하니 해당되는 부서 담당자를 2018년 8월 22일(수) 오전 11시 감사부 임원회의에 참석하게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기로 하다.
③ 제103회 총회 보고서를 작성하고 2018년 8월 27일(월) 오전 11시 감사부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하다.
④ 차기회의는 2018년 8월 22일(수)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제102회 총회 감사(중간) 일정표

날짜		피감부서	배정사항	
3 / 19 (월)	오전 (11:00 ~ 12:00)	산하속회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전국남전도회연합회	기독청장년면려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전도법인국 (재단)	유지재단 / 은급재단 / 사회복지재단	
		교회자립개발원	교회자립개발원	
	오후 (13:00 ~ 16:00)	총회본부 (기획행정국)	고시부	
		총회본부 (전도법인국)	전도부, 사회부, 구제부, 농어촌부, 군목부, 경목부, 은급부, 이만교회운동본부 교정선교위원회, 목회자 납세문제 대책위원회, 총회회관신축 준비위원회, 총회역사위원회, 총회경찰선교회, 장학재단설립위원회	
		총회본부 (교육출판국)	교육진흥국, 학생지도부, 교육부, 신학부, 면려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이슬람대책위원회, 학원선교위원회	
3 / 20 (화)	오전 (10:00 ~ 12:00)	총회본부 (기획행정국)	기획행정실, 총회임원회, 헌법개정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교단교류연합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 총회정책연구소, 세계교류협력위원회, 재판국, 헌의부, 정치부, 규칙부, 노회록검사부, 재정부, 개혁사상부흥운동위원회, 총회장상 포상위원회, 언론홍보위원회, 산서노회 조사처리위원회, 총회산하기관 정관개정연구위원회,서광주노회 전남제일노회 합병위원회, 교회실사 후속처리위원회, 헌법위원회설립 준비위원회, 성석교회 복귀 처리위원회, 여성사역자 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3.1운동 100주년 기념준비위원회, 은급재단(납골당) 조사처리위원회, 종교개혁5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예산심위위원회	
		총회본부 (교육출판국)	칼빈기념사업위원회, 총회백서 발간위원회, 순교자기념사업부, 출판부	
	오후 (13:00 ~ 16:00)	총회본부 (교육출판국)	출판사업국, 예장출판사	
		기독신문사	광고/경리/회계 편집국	
3 / 21 (수)	오전 오후	총신대(양지)	박물관, 기타시설 (생활관, 경건훈련원,도서관,평생교육원(총회신학원))	
		세계선교회	행정국, 훈련국, 선교국, 화성요양원, 재정국	
3 / 22 (목)	오전 오후	총신대(사당)	장학기금, 총신대보사, 총신교육방송국, 산학협력단, 사당생활관, 성지언어연구소, 기독교교육연구소, 도서관지원팀	
			학교비, 교수석좌제, 평생교육원, 교무입학팀, 산업교육학부, 교회음악연구소, 교회선교연구소	
			총신유치원, 법인, 학교발전기금, 총무시설관제팀, 전산정보팀, 목회대학원	
			교직원인사팀, 총신백만기도후원팀, 사당종합관(식당), 총신원보사	
			정기감사(중간) 최종 정리	

제102회 총회 감사(중간) 상비부 지적사항

■ 정치부

□ 지적사항

1. 정치부원 선정 목사 6, 장로 4로 배정 잘하고 있음
2. 특별위원회 지역안배와 목사 6, 장로 4 배정하고 있음

□ 기타사항

1. 정치부장 특별감사 요망(특별감사)

■ 헌의부

□ 지적사항

1. 헌의부는 모든서류 기간을 지키토록 지시하고 경유 유무를 판단하여 교통정리 역할을 잘함이 의무이므로 규정대로 회립하여 의결하도록
2. 문서, 노회경유, 직인등을 정확히 확인 토록 지시

■ 재정부

□ 지적사항

1. 총회예산 중 지원금 추경을 허용하지 말 것(일반지원금, 특별지원금, 각기관연합회지원금)
2. 모든 지출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부득불한 예산추경은 당해연도 7월말일까지 처리할 것
3. 모든 부서의 회의 및 행사 기획은 당해 7월말까지 마무리 하고 8월 감사 및 결산 마감을 위해 협조할 것
4. 총회 예산수입(세례교인헌금 상회비)은 당회기 7월 말까지 입금하도록 독려하여 원활하게 지출되도록 할 것

■ 규칙부

□ 지적사항

1. 꼭 필요한 재정만 청원 할 것과 잔액은 총회본부에 귀속 시킬 것
2. 모든 상비부, 선거관리위원회 선정 기준도임원 선정기준에 준하여 통일 규정으로 할 것

■ 고시부

□ 지적사항

1. 정신감정서 계속 시행 할 것
2. 잘 준비하여 고시에 지장없도록 철저히 시행할 것

■ 노회록검사부

□ 지적사항

1. 특이사항 없음

■ 재판국

□ 건의사항

1. 감사부가 재판 판결문을 열람을 요구 할 시 재판국에서 판결문을 열람 하도록 허락 및 불허에 대한 재판국 규정안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함
2. 환부 조치에 대한 정확한 규정 안을 만들 것을 건의함

■ 은급부

□ 지적사항

1. 총회 차원에서 대형교회순회하여 은퇴목사를 섬기도록 협조 요청 함

■ 순교자기념사업부

□ 지적사항

1. 순교자, 순직자 발굴과 순교자 유족 및 자료정리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할 것임

■ 사회부

□ 지적사항

1. 사회부는 분명 국내 사회부임에도 불구하고 한센인 지원금 1500만원이 해외로 지원됨은 잘못된 것임으로 시정을 요함
2. 지역별 사회부 세미나는 목적을 분명히 하여 교단에 위상에 알맞게 많은 참여로 진행토록 함이 좋은줄 아옵니다

■ 교육부

□ 시정 및 개선사항

1. 교육부 산하 진흥원에서 예산편성 집행을 교육부 임원회의 의결이 없이 진행됨은 분명 월권행위임으로 시정요망
2. 한국교회 총회교육 미래전략수립 사랑방포럼은 국장과 소수인원(교회부목사 몇 명)으로 진행하는 것 총회위상에 흠집이 될 수 있음으로 분명 시정토록 요함
3. 전국교회 우편발송과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소수교회 중심으로만 진행함은 시정되어야 마땅함
4. 교육진흥원 출판 지적재산권(저작원) 확인 결과 보고요청하다.(익일까지)

■ 교육진흥국

□ 지적사항

1. 지출항목 비고란에 좀 더 상세한 기록이 필요함
2. 감사 시 각종 증빙서철을 함께 제출토록 할 것
3. 교육행정(진흥)국의 년간 사업계획 및 현황 첨부할 것

□ 기타사항

1. 연구원(계약직)의 4대보험 가입등 복리후생 대책을 세우도록
2. 연구원(계약직)의 기본급여 외 상여금 or 수량등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요함\

■ 면려부

□ 시정 및 개선사항

1. 회의록 기록 미비(※1차 임원회시 임원조직 및 실행위원 누락)
2. 제28차 세계CE대회 참가 재정 첩원에 대하여
   1) 총회 임원과 면려부 임원 참가는 고려할 것
   2) 참가 인원이 확정된 후 실비 지원 원칙으로 할 것
   3) 여행사 계약시 복수의 견적을 받고 계약 할 것

□ 기타사항

1. 면려부 임원들의 청장면려회(CE)의 각종 행사 및 사업에 필히 동참토록 건의 바람
2. 청장년면려회 재정 청원은 면려부 회계와 부장의 결재 후 처리됨이 바람직 함

■ 학생지도부

□ 지적사항

1. 학생지도부 산하 지역별 조직이 거의 없으며, 실제 참여하는 학생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음 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총회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SCE 지역별로 간사를 임명하여 지역별로 조직을 재건하고 SCE 부흥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 신학부

□ 지적사항

■ 전도부

□ 지적사항

1. 미자립교회 지원(30교회)비를 전도부 임원 노회는 양보하여 타노회에 골고루 노회 배정 할 것을 권고함
2. 전도부 산하기관의 관리중 산하기관을 전도부의 지시를 받을 것(반드시 결제를 받을 것)

3. 전도부 산하기관 여전도회 현 총무는 정년이 넘어서 이에 본 총회 규정에 위배되므로 즉각 사임처리 할 것

■ 농어촌부

□ 지적사항

1. 농어촌부에서 각 노회 서기 목사들에게 서면 및 문자를 통해서 연락을 유기적으로 취해서 많은 교회 및 노회에 지원 현황을 받아서 처리 할 것을 권면함

■ 군목부

□ 지적사항

1. 제100회, 제101회, 제102회 감사지적사항인 본교단에 여군목이 없으므로 타교단에 비해 군선교(여군)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 방안을 연구하라는 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군목부 전체회의를 열어 대책마련을 하도록 지시함, 아울러 여군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현 여군목 정원은 통합측, 백석측에서 독차지하고 남자군목만으로는 여군의 전도, 양육, 상담에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는바 황금어장 군선교를 위해서 군목에 해당하는 여성에게 안수하여 '군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대안에 될 수 있다는 논의를 하여 이를 총회에 헌의하도록 조치하였음
2. 제100회, 제102회 감사지적사항인 군목부 군선교회의 상호협력적 관계와 군복음화를 위해 군선교 관련 4개 단체를 포함한 '군선교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조직하도록 조치하였음

■ 경목부

□ 지적사항

1. 정기감사기간 동안에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감사에 충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련회를 간 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음. 차후에는 이런일을 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였음.

■ 구제부

□ 지적사항

■ 출판부

□ 지적사항

1. 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특별감사)

제102회 총회 감사(중간) 상설위원회 지적사항

■ 선거관리위원회

□ 지적사항

선거규정 위배 시정

1. 선거규정 제4장 15조(등록공고) 중 재판국원 자격기준은 총대경력 7회이상으로 규정되었으나, 〈영남지역〉장로후보 전창덕 장로는 총대경력 6회로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이나 후보로 추천하여 자격이 충족된 후보는 탈락되고 미자격자가 당선된 사실이 있음.
   규정위배로 당선된 현 재판국원(OOO)SMS 활동(당선)을 즉시 취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2018.4.1.까지 감사부장에게 통보바람.
2. 선거관리위원 선거는 정수 1.5배로 후보를 접수 받고, 1.5배 이내일 경우는 총회현장에서 정수의 1.5배 이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다득표 순으로 당선된다고 규정하였으나, 영남지역 장로위원 선거에 있어서 정수 2명에 후보 2명만으로 규정을 위배하여 투표케 한 사실이 있음.
   이와같은 선거관리는 공정한 선거와 규정 위배이며, 총회 현장에 참여한 총대들을 기만하는 사안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책임을 물여야 할 것임(천서제한 등)

■ 이단 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 지적사항

1. 지역별 세미나의 효율성 재고
2. 연구, 조사위원회의 활동비는 증액 하되 지역별 세미나는 중단할 것, 총회홈페이지, 노회, 교회홈페이지에 링크를 강화하고 기독신문에 홍보할 것
3. 소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할 것

■ 이슬람대책위원회

□ 지적사항

1. 아카데미와 세미나의 계획은 이슬람에 대한 이해에 맞추어져 있고, 교회와 목사들이 또 대사회와 국가에 대한 대의적 대책을 세우는데는 전무한 것으로 현재 한국사회에 그리고 교회에 미치는 현황에 문제점 먼저 파악함을 선행해야 할 것임
2.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대사회적면과 현총회를 교회가 대처해야하는면에 집중할 것을 요구함

■ 통일준비위원회

□ 지적사항

1. 통일준비위원회는 정책이 없고 북한교회 재건 정보도 없고 일관성이 전혀없는 위원회로 비쳐짐으로 빠른시일에 수립을 요한다.
2. 의결내용확인결과 주일에 행사를 결의하고 시행하려는 것은 제102회 총회 결의(요람 98페이지, 다) 성경대로 주일성수를 철저히 하기로 가결하다를 위반한것이므로 시정하여야함

을 지도키위해 임원을 출석시켜 감사부에서 재확인하기로 하다.
3. 제101회 총회 감사 시정지도 시정확인키로 하다.

■ 총회정책연구위원회

□ 지적사항

1. 회기가 절반 지나갔는데 사업진행이 더딘 것을 시정 속히 진행할 것
2. 목회메뉴얼 발간이 총회 결의인데 공청회 및 책자발간 속히 진행할 것
3. 사업진행을 위한 예산이 정책연구위원회 반영되지 않아서 책정이 턱없이 모자라니 추경예산 청구합니다.

□ 기타사항

1. 예산청구한 금액이 1억인데 전혀 반영되지 못함

■ 총회역사위원회

□ 지적사항

1. 유적지 지정관련 매뉴얼이 없으므로 심히 주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준을 선정하여 신중히 지정토록 함을 요합니다.

■ 교단연합교류위원회

□ 지적사항

1. 장자교단으로서 교단 연합교류를 통해서 교단의 위상을 세워 나갈 것

■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 지적사항

1. 위원 18명 당연직 4명 합계 22명은 수가 너무 많고 회의시 마다 불참자는 절반에 달한다.
   1) 위원의 적정 수는 7~9인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폐지하고
   2) 위원은 열정과 외국어구사능력, 전문식견을 가진 자로
   3) 위원 선정을 규정 제2장4조에 위원회에서 추천 방식은 삭제하고 총회 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할 것이며
   4) 임원 선출방식은 구두로전한다고 했는데 비밀투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도록 할 것임

■ 언론홍보위원회

□ 지적사항

1. 정관 사업계획 등이 필요함
2. 예산편성과 대사회 관련 연결채널이 필요함

제102회 총회 감사(중간) 특별위원회 지적사항

■ 예산심의위원회

□ 지적사항

1. 우리 총회 연 예산 규모는 100억이상인 바
 1) 전문성 있는 회계사 세무사등의 유경험자를 위원 내지 전문위원으로 1인 이상 선정토록 할 것
 2) 매년 외부 회계사를 통해 재정감사를 실시토록 할 것

■ 헌법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

□ 지적사항

1. 현재 활동하고 있는 헌법개정위원회가 있는데 헌법위원회가 필요한지 재고해 봐야함
2. 위원회를 1차 모임에서 조직한 다음 연구도 없이 바로 공청회 하기로 결의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됨

■ 장학재단설립위원회

□ 지적사항

1. 장학재단이 속히 설립될수 있도록 기금확보 방안과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

■ 칼빈기념사업위원회

□ 지적사항

1. 권역별 설명회 결과는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가 더 바람직 함
2. 위원회에서 발간된 3종의 도서 제작권수와 판매수 재고등 현황 파악이 필요함
3. 판매 금액에 대한 출판부 입금 확인

■ 헌법개정위원회

□ 지적사항

1. 7년동안 위원회의 역할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노력하여 제103회 총회시에 완결될 것을 보고 있음
2. 현재 각 노회 헌법개정건을 수의하고 있고 잘정리하여 처리할 것

■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 지적사항

1. 원장 장부 기록시 전체 예산을 기재한후 차변, 대변을 기재하고 잔액 정리 해야 됨
2. 사업규모와 예산 지출에 비해서 참석인원(초청대상)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홍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총회백서발간위원회

□ 지적사항

1. 현재 회의는 일회뿐이고 2차회의는 연기된 상태인 바 임원, 위원들은 관심과 열정을 가질 것
2. 사업계획서를 재검토, 예선 배정을 받아 진행하도록 할 것
3. 기존 사업계획서 중 공청회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원들과 집필진 그리고 필요하다면 총회역사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방향성을 세움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

□ 지적사항

1. 총회차원에서 잘 준비하여 유인물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교육을 잘 하였습니다.

■ 총회장상포상위원회

□ 지적사항

1. 총회 산하에 격려하고 수상하여야할 단체와 개인을 잘 발굴하여 표상할 수 있도록 힘 쓸 것

■ 개혁사상 부흥운동위원회

□ 지적사항

1. 위원회 구성 청원을 총회 임원회에서 청원 할 수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총회에 청원하여 결의하였으므로 분명 시정이 필요함
2. 위원회 구성 20여명을 선정함은 기준과 숫자 과다하며 분명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할 것
3. 결의 내용을 확인결과(17.12.12) 1차회의에 총신비상사대 금식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섬기기로 결의한 것, 위원회와 관련 없는 것 개입한 것 불법적 결의임

□ 기타사항

1. 특별 위원회 지역 대표가“전북”은 빠져 있음 편중된 이유는 무엇이고 왜 빠졌는지 확인하고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할것임

■ 산서노회조사처리위원회

□ 지적사항

1. 현재 조사중이므로 위원회에서는 최선 다해 조사 후 다음 감사때 보고해 주실 것

■ 총회산하기관 정관개정연구위원회

□ 지적사항

1. 정기 감사시 미비된 부분은 잘 정리하여 보고할 것임

■ 교회실사 후속처리위원회

□ 지적사항

1. 시작 단계여서 특별사항이 없음

■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업개발 위원회

□ 지적사항

1. 활동이 저조함
2.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여성사역자 지위향상을 위한 구제적인 방안과 사역을 개발할 것

■ 총회회관신축준비위원회

□ 지적사항

1. 총회 유지재단 안에 (정관상)모든 재정 및 관리를 (신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총회회관 신축 준비위원회를 두는 것은 시간과 재정 낭비가 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 됩니다.

■ 3.1운동 100주년 기념준비위원회

□ 지적사항

1. 2019년 3월 1일 3.1 운동 100주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세울 것

■ 은급재단(납골당)조사처리위원회

□ 지적사항

1. 철저히 조사하여 제103회기 총회에 보고할 것(특별감사)

■ 조직교회 후속 처리위원회

□ 지적사항

1. 시작 단계여서 특별사항이 없음

■ 장학재단설립위원회

□ 지적사항

1. 장학재단이 속히 설립될수 있도록 기금확보 방안과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

■ 교정선교위원회

□ 지적사항

1. 실질적인 교정선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우고 총회 차원의 적극적인 교정선교가 필요함

2. 교정 목사들을 회집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총회 정채을 제시하여 미래 지향적인 교정선교를 활성화 시킬 것
3. 교정선교의 지원을 위한 지원금의 증액이 필요함

■ 경찰선교회

□ 지적사항

1. 현 총회 산하 경목부가 존재하고 있고, 경찰선교회와 사역이 유사하고 중첩내지 동일 사업을 행하고 있는바, 행정상 효율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경목부(총회 상비부)로 이관해서 시간과 재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도록 해야함.
2. 경찰선교회 회의비 및 지원금은 가능하나 경조비를 지출함은 무제인바 지출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청함

■ 이만교회운동본부

□ 지적사항

1. 교회 개척과 전도를 위해 2만교회 운동 본부를 두고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바, 총회 상비부 전도부와 사업의 중첩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을 전도부에 이관 내지 통합하여 행정상, 재정의 효율성을 가져오게 하실일

■ 학원선교위원회

□ 지적사항

1. 지적사항 없음

■ 총회목회대학원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

□ 지적사항

1. 정상화 전권위원회의 결정과 처리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 교육진흥국

□ 지적사항

1. 지출항목 비고란에 좀 더 상세한 기록이 필요함
2. 감사 시 각종 증빙서철을 함께 제출토록 할 것
3. 교육행정(진흥)국의 년간 사업계획 및 현황 첨부할 것

□ 기타사항

1. 연구원(계약직)의 4대보험 가입등 복리후생 대책을 세우도록
2. 연구원(계약직)의 기본급여 외 상여금 or 수량등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요함

제102회 총회 감사(중간) 세계선교회 지적사항

■ 세계선교회 행정국

□ 지적사항

1. 부비(회의비) 지출에 대해서는 총회행정처럼 반드시 계좌이체를 하여 정리 할 것
2. 임원회에 명예 이사장이 참석(P 규정 P.13)은 자문요청시 참석이 아닌 것은 불가하므로 규정수정요함
3. 임원회에(규정 P.13) 별도 총무를 임원으로 두고 참석함은 불가하므로 규정 수정 요함 현재 설교, 본부 총무가 존재하는 바 별도 총무를 둘 이유가 없으므로 부적절하고 매 임원회 참석으로 부비에 효율성도 떨어짐
4. 선거관리규정(규정 P.27)에 “정년전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직전이사장” 1인으로 수정요함
5. 전문위원(규정 P.17)을 GMS 이사임원들을 전원 제외하고 선임하라로 수정요함(임원회에서 결정하고 결정된바를 전문위원에 들어가 설명하고 진행하면 창의적 전문위 활동이 위축됨)
6. 이사회와 GMS 행정을 이원화 할 것(P. 40)(본부조직 표) 이사회는 후원회로만 존치시킬 것
7. 임원수련회 여행사 계약관계 부적성 2018년 2월 26 ~ 3월 1일(3박 4일)에 실시한 제1차 임원수련회를 대만에서 실시(예선 20,000,000)하였는 바 공개 입찰하여 계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견적의뢰 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으로 계약 관계법에 의거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8. 선교사 회비 장기 미납자 처리의 건 선교사 회비 장기 미납자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운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규정집 : 본부행정세칙 제4장7절51조)

□ 기타사항

1. 현재 요양원에 있는 산서노회 소속으로 있는 GMS교회는(최명국 목사) 빠른 시일안에 GMS 밖으로 이전할 것

■ 세계선교회 훈련국

□ 지적사항

1. GMS에서 훈련 받지못한 현지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GMS소속선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매년1월 5주간 특별교육기간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훈련받도록 홍보 독려하여 GMS소속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발전, 유인정책 훈련(교육)개발하여 시행할 것
2. 선교사계속교육시(해외소재 선교사) 강사분들을 다양하게 전문성을 가진 강사를 선정하여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할 것

■ 세계선교회 선교국

□ 지적사항

1. GMS 선교국에서 현장과 업무연결에 민첩함이 필요함

2. 선교사 현장에 맞춤행정이 필요함
3. 선교현지 자산관리에 철저한 매뉴얼이 꼭 필요함
4. 은퇴한 선교사 자료를 꼭 남겨야할 필요성 인식함
5. 중국, 인도 선교사들 비자문제로 재배치가 심각함을 해결

■ 세계선교회 재정복지국

□ 지적사항

1. 지역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활성화되어 GMS선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염두할 것
2. 군목부 감사에서 감사부는 군선교를 위해 여성군목을 '군선교사'로 파동할 방안을 염두하도록 지시하였는바 GMS도 세계선교를 위해 '여성직능목사'를 '해외선교사'로 파송할 방안을 염도하고 방안을 찾아볼 것

■ 세계선교회 사회복지재단(요양원)

□ 지적사항

1. 직원들의 탈의실이 없었습니다. 세탁실을 사무실 옆에 설치 했는데 세탁실을 다른곳으로 옮기고 직원 탈의실을 고치도록 지시
2. 요양원 입구가 어둡습니다. 밝은 조명이 필요함을 지시
3. 예배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GMS 교회를 이용)

□ 기타사항

1. 모든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2. 전보다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3. GMS 실행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속히 집행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4. GMS 복지 법인에 대해 총회에 청원하여 존폐나 위탁, 후원에 대해 연구위원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02회 총회 감사(중간) 산하기관 지적사항

■ 유지재단

□ 지적사항

1. 당연직 이사들이 의무를(이사회비결의 300만원) 전혀 이행하지 않으므로 당연직 이사를 고려할 필요가 요함을 보고드리옵고 선출된 이사들도(2014년 98회기) 5년동안 이사회비를 전혀 납붙이 않으므로 강력히 시정을 요함
2. 제102회 총회 결의대로 정관개정 신속히 진행토록 요함
3. 교단 총회시에 결산은 보고하나 예산을 보고하지 않음을 시정
4. 부동산 중 제주 신일교회 건은 무상 이용권을 허락하는지 행정조치가 분명히 필요함
5. 총회 회관 외벽 리모델링 시대에 맞추도록 요함
6. 기독신문 임대료계약이 필요함

■ 은급재단

□ 지적사항

1. 회의록 작성시 수기로 작성할 것임(철저히)
2. 이사회 서기가 부재하므로 선임할 것임

■ 사회복지재단

□ 지적사항

1. 법인에 피해가 없도록 위탁운영체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2. 모든 유동자산은 안전자산으로 관리 해야됨
3. 관리직원 1명으로 관리하기에는 부족함

■ 교회자립개발원

□ 지적사항

1. 처음으로 총회 산사기관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앞으로 잘할 것을 약속하고 최선을 다해줄 것

■ 총회목회대학원

□ 지적사항

1. 현 원장이 없으므로 교무처장이 전권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따르기로 하다.
2. 회계장부는 수기로 할 것.

제102회 총회 감사(중간) 산하 속회 지적사항

■ 전국남전도연합회

□ 지적사항

1. 재정 지출시 영수증 철저히 구비하여 첨부 할 것
2. 총회 임원 취임화환은 총회장님께만 보낼 것
3. 남전도회 회계장부는 5년동안 보관할 것(한회기 마감하면 한회기 모든 장부는 폐기하고 있음)

□ 기타사항

1. 36회기 사업계획서, 회의록, 재정장부를 첨부하여 특별감사할 것을 건의함

■ 기독청장년면려회

□ 지적사항

1. 회칙에 관하여 제2조(목적)에서 교단의 헌법을 준수하고 총회지도를 받는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회칙을 개정함이 마땅하고
2. 예산서 수입부 '총회지원금'항목에서 총회보조금 일억원외에 세계CE대회지원금으로 팔천오백만원을 추경으로 신청하고 있는 바 회의록에서 그 내역을 보니 총회임원, 면려부임원, CE회원의 대회 참가비로 밝히고 있는데, 대회참가비는 자부담으로 가야 마땅할 것임
3. 69회기 총계정 원장에 의하면 회장, 총무등 임원이 여비명목으로 5500원까지 일일이 청구하고 있는데 봉사하고 섬기는 입장에서 소소한 것까지 청구함이 마땅치 않고
4. 69회에 전국CE 제2차 중앙위원회 회계보고에 선거관리비가 8백만원 지출되었는 바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바임

■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 지적사항

1. 임역원 회비 납부율이 저조함
2. 주일학교연합회의 특성상 총회 지원금을 증액하여 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할 것
3. 강사 선정에 투명성을 재고할 것
4. 여행사 선정시 경쟁입찰을 통하여 진행할 것

■ 전국여전도연합회

□ 통합의견 보고서

1. 여전도회 연합회의 감사한 제 소견은 상당기간의 누적된 문제인 것으로 사료되어 여전도 세부사항인 금전출납부 원장 및 분계장, 기본적인 사업계획서, 회칙, 정관, 건축관련 자료(서류 및 장부)등 통장관리 등 통장원본 등을 전도회로부터 제출받아서 정밀 검토가 필요하며 정관 등을 확인 후 고질적인 문제인 현행 상임총무에 대한 과거 누적된 약 20년에 걸친 행적 및 급여 및 활동비, 유지관리비 등을 검토하고 현행 총무의 나이(정년초과)에 대한 총회

규정의 위반 여부등을 적용해서 해임토록 하고 여전도 연합회의 통장, 부동산, 현금 등에 대한 명의를 확인 후 총회의 관리 차원에서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감가기간 연장 또는 특별감사를 통해서 또는 총회 임원회나 감사부의 결의 또는 직권으로 자산동결 및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 지적사항

1. 여전도 연합회 회칙에 총무 임기연한을 명확하게 기재, 시정할 것을 권면
2. 주일헌금 내역은 총회에 위반 되므로 시정 할 것을 지시함
3. 군전도 헌금에 대한 명칭 등을 정확하게 표현 권면
4. 관리비가 지출액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음
5. 전도비와 송금수수료를 구분해서 회계 처리 토록 지시함
6. 총무의 급여 지출건에 대해서 과다 지출 및 건강보험료 지급 등 시정 지시함
7. 사택관리비에 대해서 총무에게 지금은 잘못임을 지시함
8. 송금수수료는 통신비로 일괄처리 토록 지도함

□ 기타사항

1. 현행 총무가 20년이상을 하고 있으며 총회 정년연령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차기 총회시 교체할 것을 권면함
2. 현재 간사를 따로 급여를 지급 하고 있으므로 간사를 활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상임총무는 없어도 될 것 같음
3. 총회시 증경총회장 등 전형위원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옳고 총회의 연령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면함

제102회 총회 감사(정기) 일정표

날짜		피감부서	배정사항	
8/6(월)	오전 오후	산하속회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전국남전도회연합회	기독청장년면려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전도법인국(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설립위원회	
		기독신문사	광고/경리/회계 편집국	
		교회자립개발원	교회자립개발원	
		총회본부(기획행정국)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개혁사상 부흥운동 위원회,	
		총회본부(전도법인국)	총회역사위원회	
		총회본부(교육출판국)	칼빈기념사업위원회, 순교자기념사업부	
8/7(화)	오전 오후	총회본부(기획행정국)	고시부, 규칙부, 언론홍보위원회, 서광주전남제일노회합병위원회, 총회산하기관정관개정위원회, 3.1운동100주년기념준비위원회, 노회록검사부, 총회정책연구위원회,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산서노회조사처리위원회	
		총회본부(교육출판국)	교육부, 교육출판국(진흥원), 면려부, 학생지도부, 신학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이슬람대책위원회, 학원선교위원회	
		총회본부(교육출판국)	출판부, 출판기획편집, 출판영업	
		총회본부(전도법인국)	총회은급부, 총회유지재단	
8/8(수)	오전 오후	총회본부(기획행정국)	통일준비위원회, 총회장상포상위원회, 은급재단(납골당)조사처리위원회, 교회실사후속처리위원회, 교단연합교류위원회, 총회임원회, 총회실행위원회, 헌법개정위원회, 재정부, 예산심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총회본부(전도법인국)	총회회관신축준비위원회, 전도부, 농어촌부, 군목부, 경목부, 구제부,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 교정선교위원회, 이만교회운동본부, 총회경찰선교회	
8/9(목)	오전	총회본부(기획행정국)	헌법위원회설립연구위원회, 총회산하정관개정위원회, 성석교회조사처리위원회, 재판국, 정치부, 기획(인사 및 직무분장), 행정(공문수발, 발송 등)	
	오후	세계선교회	행정국, 훈련국, 선교국, 화성요양원, 재정국	
8/10(금)	오전 오후	세계선교회		

제102회 총회 감사(정기) 상비부 지적사항

■ 총회임원회

□ 지적사항

1. 임원회 회의록 기록이 회의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회의 후 작성되어 몇몇 임원들에게 확인받는 것은 회의내용과 취지가 달라질 수 있음.
2. 임원회 식비가 여비 규정보다 초과되어 지출됨
3. 총회특별위원 선정은 총회규칙 11조3항에 의거하여 5인 이내로 정할 것.
4. 총회임원은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총회규칙 11조 참고)
5. 총회에 접수된 서류는 서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구분하여 신속하게 처리(이첩) 해야함.
6. 총회에서 상비부와 위원회로 수임 한 것에 대하여 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월권하는 것임.

■ 총회임원소위원회

□ 지적사항

1. 회의록 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것들이 있음.
2. 소위원회가 모일 때에는 헌의서 확인 등 목적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해야함.
3. 임원회의 소위원을 조직하면서 결과는 많이 미흡하다.
4. 앞으로 임원소위원회 조직은 가능한 자제하기 바람.

□ 특이사항

1. 제102회기 임원회의 서기는 전례 없는 임원회가 구성한 소위원회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한회기 동안 활동한 내역들을 보고서에 남겨 감사준비 자료를 제출한 것은 참 잘하였다고 사료됨.

■ 총회실행위원회

□ 지적사항

1. 실행위원회 회의에서는 소집 시 통보된 안건에 대하여 다루어야 한다.
2. 총신비상사태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들을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
3. 총신비상사태를 위한 교회들이 모금한 모금액에 대하여 차기회의에서 모금 총액에 대한 보고가 없었고, 지출결과 보고가 전혀 없음.

제102회 총회 감사(정기) 상비부 지적사항

■ 정치부

□ 지적사항

1. 특별위원회 선정은 총회규칙 제3장 11조 3항에 '모든 위원은 5인 이내'라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위반하고 추가로 초과하여 선정하는 것은 잘못됨. 앞으로 규칙에 따라 5인 이내로 선정하는 것을 준수할 것.
2. 총회규칙 제3장 11조 3항에 '총회임원은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특별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됨. 규칙을 준수해야함.
3. 헌의안을 다룰 때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본회에 상정할 필요 있음.

■ 헌의부

□ 지적사항

1. 헌의부 회의 시 제척사유 되는 개인과 노회는 참석 할 수 없음
2. 모든 문서는 규칙대로 날짜를 지켜 헌의부에 이첩해 줄 것
3. 헌의부 서류는 헌의부 임원이 볼 수 있도록 할 것
4. 헌의부는 서류일체를 잘 정리 정돈하여 제103회 총회에 임할 것.

■ 재정부

□ 지적사항

1. 이상없음

■ 규칙부

□ 지적사항

1. 총회 모든 기관은 규칙부에 질의하여 규칙에 의한 답을 얻어서 규칙을 지키면서 혼란이 없도록 할 것.
2. 규칙부원은 전문성이 요하기에 전문부원이 필요함으로, 공천 시 전문가를 배정할 것.
3. 총회 내 규정집을 통일되고 신속, 정확하게 하기위해 디지털화 하려고 재정지원(8백만원)을 요청하였지만 지원 안됨. ; 모든 총대원이 통일된 규정을 보고, 적용하여 혼란이 없도록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지원되어 디지털규정집이 제작되어 혼선 없는 해석으로 한가지 해답을 얻을 수 있음.
4. 규칙부 규정집은 전문직원이 관리 할 것.

■ 고시부

□ 지적사항

1. 고시부는 고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고시 매뉴얼'을 준비하여 때마다 적용하는 다른 기준

의 다음과 같은 사례를 시정해야 함

① 서류미비 고시자와 고시 접수 시간을 초과해서 제출되는 서류를 접수 하는 것은 시정해야 함(미비자 5인, 초과자 2인 접수)

② 고시 3년동안 응시생의 합격에 대해서도 보편성을 고려하여 매뉴얼을 작성하고 시행해야함 (3년 또는 5년 해마다 기준이 다름)

③ 고시부 임원 선정 중 부서기, 부회계 등 부임원 선정은 불가하며 총회산하 상비부 임원과 형편성에 부합하게 하여 통일성을 유지하고, 부비 지출에 통일성 있게 지출해야함.

④ 선교사 파송 예정자에 대한 합격 유무와 중국 타 국가에 총신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강도사 고시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요청 다문화 시대와 시대적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매뉴얼화가 요구됨.

2. 고시부는 총신 초유의 사태에 헌법을 넘어 초법적인 강도사 고시를 시행하였는바 불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총회가 파한 후 법대로 어떻한 외부의 제한을 받지 않토록 할 것

① 총신 미졸업자 고시서류 접수 후 고시 시행한 일

② 총신 졸업자가 아닌 칼신, 대신, 광신 졸업자에게 총신운영이사회에서 특별 교육이수로 강도사 고시 시행한 일

③ 학기 미달자 학과 학점 미달자로 하여금 2학기 중 이수와 학점 취득을 전제로 한 개인 확약서로 초법적 강도사 고시를 치르도록 시행한 일임.

■ 노회록검사부

□ 지적사항

1. 1개 노회(경기중앙노회)를 제외하고, 총회산하 전 노회가 노회록을 제출한 일은 잘 된 일임.
2. 중간감사 시 노회록 샘플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는데, 차기 회기에서 제작 배포하도록 지적함.

■ 재판국

□ 지적사항

1. 재판국의 소송, 재판 절차 매뉴얼이 필요함. 회기 또는 어떤 사람에 따라 절차가 바뀌므로 총회 재판 부실의 원인이 되고, 신뢰가 상실되는 원인이 된다.
2. 감사부 중간감사 결과 재판국원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국원이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처리하지 않음은 직무유기이므로 차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토록 경고함.
3. 재판국 회의소집 내용 검토결과 성수(출석미달)되지 않은 회의가 반복됨은 시정을 요함.
4. 재판국 국원은 쌍방(원고·피고)을 소환하여 심문하는 것은 가능한 자제하고, 서면(서류)을 중심으로 심리할 것을 권장함.

■ 은급부

□ 지적사항

1. 한 회기동안 부장을 중심으로 위원들이 헌신적으로 수고 한 것으로 사료되고, 더 많으신 은퇴목사님들을 잘 섬겨 본 교단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행복한 노후가 되도록 하는 사역

을 바람.

■ 순교자기념사업부

□ 지적사항

1. 예산에서 결산이 추가 지출되어 다음회기로 이월 되는 것은 불가함.
2. 순교자기념사업부 마이너스 결산(-142,210)은 불가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여 회의가 더 많이 모인 것이 아닌 급지의 변동으로 생겨진 일인바, 재정부 예산 배정 시, 회의비를 상황에 맞게 지급하도록 배정해야 함.

■ 사회부

□ 지적사항

1.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제반 문제들을 선도하는 역할은 예산의 부족으로 할 수 없는 아쉬움을 가지나 권역별 다문화 가족초청 세미나와 위로회를 개최한 일은 잘한 일로 사료되며 예산의 증액으로 교단적인 일들도 잘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교육부

□ 지적사항

1. 교육부 수양회 행사 입찰공고대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함
2. 교육부 산하 주일학교연합회 지원금을 교육부 승인 후 지원토록 해야함.
3. 대외 행사시에 개인 또는 교회 찬조 협찬문제 제고토록 할 것.
4. 교육부 행사 대외 또는 해외 행사를 자제토록 할 것.
5. 회의록 기록시에 입찰 공고 내용 후 투표결과를 상세히 기록토록 할 것.
6. 지역 협의회 까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자세시키도록 할 것(주교연합협의회 지원은 자제해야 함)

■ 면려부

□ 지적사항

1. 세계C.E.대회 미참가하였다. 전년도 세계C.E. 개최국으로서 제28차 세계C.E.대회(미국)에 다수가 참석하기로 계획하고, 참여해야할 의무가 있는바 재정부에 청원한 추경예산 8,500만원을 이유없이 기각하여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한 일은 교단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여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토록 재정부에 권고함.

■ 학생지도부

□ 지적사항

1. 다음세대를 위하여 총회가 학생지도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연구와 집중이 필요하고, 학생지도부 전문간사를 두어야 한다.
2. 행사를 위한 연례행사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예산을 투입에 비해 효율적인 면에서는 맞지 않다.

3. 서기 안승주 목사는 행사참여 신청했다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고, 이로 인한 위약금(777,000원)을 본 부서의 공금으로 지불한 것은 본인의 개인 사정이므로 발생한 위약금은 본부에 위약금을 환불(반환) 할 것
4. 본부서는 지역별 또는 노회별로 학생연합집회와 영성훈련을 위하여 홍보, 동려하여 활성화 시키고 지도할 것, 전국적인 학생을 한군데 모아서 하는 것 보다 지역별로 하는 것이 효과적임.

■ 신학부

□ 지적사항

1. 총회세계선교회(GMS) 여성선교사 성례 시행권에 대해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총회에 보고할 것.

□ 특이사항

1. 채규현 씨에 대한 이단성에 대하여 신학부로 의뢰된 신학사상을 조사한 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한 번 더 검증하고자 임원들뿐만 아니라 전문성 있는 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김길성 목사)를 통해 검증을 받도록 한 것은 여러면에서 잘되었다고 사료됨.

■ 전도부

□ 지적사항

1. 전도부 산하기관인 교정선교위원회와 전국여전도회는 지시를 받고 결재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함.
2. 총회기관 중 수요예배를 전도부 주관으로 시행하도록 할 것.
3. G.M.S.와 연합으로 이주민을 위한 선교(전도)방안을 연구하도록 할 것.
4.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해 선정 시 자격요건을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시행하도록 할 것.
5. 전도부 예산에 이만교회운동본부, 남·여전도회, 교정선교회 등 산하기관의 예산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전도부장에게 지출 청원을 하고, 허락받아 재무과로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6. 총회예산서와 총회규칙이 상반됨으로 규칙을 개정하여 총회예산서와 같이 전도부에서 관장하고, 이만교회 운동본부와 교정선교회 등은 감사 시 총회 지원금을 포함한 자체 회비 및 협찬금 등을 포함 하여야 함.
7. 경찰선교회 등 기타 예산이 배정된 위원회도 각 상비부로 소속되어 지도 감독 등 결재를 받아야 함.

■ 농어촌부

□ 지적사항

1. 농어촌부에 재정 청원한 교회들이 노회별로 편중된 점들이 보이는데 103회기에는 160개 노회가 골고루 분배 되도록 102회기나 이전에 쏠림이 있었던 노회는 배제하고 지원 받지 못한 노회들에도 혜택이 되도록 하실 것 입니다.
2.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 해외 여행으로 격려 위로하여 총회에 자긍심과 사기 앙양에 헌신할 것을 좋은 일로 사료됩니다.
3. 총회산하 전노회에 혜택이 가야하며 더 어려운 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

니다.

■ 군목부

□ 지적사항

1. 군목에 대한 관리 및 모든 행정은 잘 되어지고 있으며 예산의 증액이 필요함.
2. 여자군목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전형적으로 검토해서 군선교에 타교단보다 뒤처지는 경향이 없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군선교사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군목부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보완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군선교사회와 총회군선교회는 수검표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 미필되었음. 군선교사회와 총회군선교회에 확인결과 군목부에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군목부장의 지시를 불응하여 제출하지 않았음.

■ 경목부

□ 지적사항

1. 경목부 산하 경찰선교회와 중복되는 사역이 있음으로 경찰선교회는 경목부로 단일화 됨이 바람직 함.
2. 해외수련회 시 경비는 더 많은 견적을 받아 좀 더 저렴하게 하도록.
3. 경찰청,서 지원은 지역별 형편에 맞게 선정하여 지원할 것.
4. 각 상비부 회비는 동일하게 조정하도록.

■ 구제부

□ 지적사항

1. 특별구제는 후원헌금과 지원교회 지원을 적법하게 집행했고, 후원헌금 내역도 정확하게 기재하였고, 잔액을 잔고 증명서 첨부하였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음.
2. 교단의 구제활동이 필요 시 구제부를 통하여 통일되게 반드시 집행 할 것.
3. 이번회기는 전국화재교회가 많이 발생하였고, 포항진진재난 지역을 구제부가 적극 돌보았음.
4. 구제부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예산을 증액해줄 것을 요함.
5. 구제비 300만원 중서울(초이화평교회) 양진우 사유 화재 발생에 지급된 것 확인 함.
6. 구제비 지급 기준을 확인함.
   ① 200만원 구제 기준 목사이면서 중병일 때(암)
   ② 150만원 구제 기준 사모님일 경우 중병일 때
7. 자체 서류에 맞추어서(청원서, 교회현황, 본인 진단서) 잘 보관되어있음.

■ 출판부

□ 지적사항

1. 신앙월력에 대한 지금까지 판매수와 수입성은 매우 좋으나 전국교회가 출판부 월력을 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디자인면과 다양성을 창출해야함)
2. 회의록에 출판부장, 서기 확인 싸인이 되어있지 않음.

제102회 총회 감사(정기) 상설위원회 지적사항

■ 선거관리위원회

□ 지적사항

1. 선거관리위원의 소속 노회원 중에 후보자가 입후보하는 동시에 선거관리위원직 자동 상실토록한 규정은 해당 노회원 입후보 후 심사할 시 제척사유로 선거규정 수정 필요함.
2. 총회규칙과 총회선거규정이 충돌 되는 것을 바로 잡을 것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명선거 감시 파송은 1인 2회 이상 금지하고, 과다하게 기관에 참여하는 것은 시정해야함.
4. 공명선거감시단 개인사정으로 과다히 재정 낭비한자는 조사하여 환수 조치토록 지시함.
5. 총회임원과 상비부장 입후보자의 실제 교세 수보다 세례교인 수를 적게 보고하여 세례교인 헌금을 적게 내는 것은 신앙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것은 지조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로 소급 의무 지시함이 가함.
6. 동일노회 상비부장 2인 이상 입후보 시에 해당노회로 보내어 노회장의 1인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토록함이 가함.

■ 이단 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 지적사항

1. 총회에 헌의 결의된 이단(사이비)피해 대책 건이 있을 시는 좀 더 철저히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를 가지고 대책을 세울 것을 지적함.
2. 이단 사이비에 대한 연구는 전문가에 의해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연구비로 책정된 예산을 잘 시행해 주실 것을 바람.

■ 이슬람대책위원회

□ 지적사항

1. 이슬람의 유입과 확장으로 한국교회에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데 비해서 본 교단이 이슬람에 대한 홍보와 대책에 대한 활동이 드러나지 못한 것 같은데 더 총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이슬람에 대한 본 교단과 한국교회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3. 세미나 등에 우리교단 GMS선교사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 통일준비위원회

□ 지적사항

1. 우리교단이 '조그련'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으나, 우리교단 자체적인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정보수집과 전략수립을 하도록 할 것.
2. GMS와 연합으로 탈북자(새터민)에 관련된 연합사업을 시행하도록 항이 필요함.

3. 타 종교나 교단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
4. 위원 중 전무위원의 활동이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은 위원에서 빼도록 할 것
5. 전문가(통일, 북한)를 키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6. 주일에 행사할 수 없는 총회 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를 순방하며, 행사를 하는 것은 결의를 위배되는 것임.
7. 총회예산 외 교회 후원금과 기도회 시 헌금 수입이 총회 재정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회계장부 없이 수입, 지출이 기입되지 않아 명확하게 알 수 없음.
8. 모든 상비부와 위원회는 총회에서 수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사업해야하므로 사업계획과 목적이 나와야하고, 단회성이 아닌 총회에 허락을 받아 진행되어야 한다.

■ 총회정책연구위원회

□ 지적사항

1. 목회가이드북 제작 시, 편집 시 좀 더 세밀하게 결혼, 장례식 예배 집행 시 순서를 삽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
2. 교단성을 확립하고 정체성을 세우는 꼭 필요한 가이드북이라 생각되어 '만시지탄'감이 있음.
3. 수고하신 위원들 치하함.

■ 총회역사위원회

□ 지적사항

1. 총회역사위원회 규정에 3년조로 나누어짐은 좋은 일이나, 한 인사가 계속 연임 할 수 있는 규정은 수정을 요함.
2. 사적지 지정 확인 시에 1인의 주관적인 것으로만은 부족하므로, 2-3인으로 하여금 의견서 제출토록 해야 함.
3. 보고서에 시각효과를 위해 사진 수록함이 더욱 효과적임.
4. 전반기 감사 시에 매뉴얼을 제정키로 지정한바 시행하여 총회 허락 받은 후 시행하도록 요함.
5. 사적지 지적 시 비중에 따라서 급수를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함(예:1급,2급)
6. 사적지 지정 시 왜곡, 과장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연구하여 지정하는 것이 좋을 듯함.(위원, 교수, 현지 원로목사나 장로)
7. 사적지 지정 후 사적지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을 지원함이 좋을 듯함.

■ 교단연합교류위원회

□ 지적사항

1.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참여할 것

■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 지적사항

1. 규정을 개정하여 당연직 회원을 줄이고 구도별로 3인 총9인 정도의 위원을 두는 것이 좋음.

2. 당연직 4인의 비용은 본 위원회 예산에서 사용하지 말고 총회본부의 예산을 사용함이 적정함.
3. 전문위원(외국어 능통 + 식견)은 3년 임기로 제한해서는 안되고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언론홍보위원회

□ 지적사항

1. 언론홍보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맞게 미디어, 언론에 교단을 홍보도 하고 교단을 위해하는 언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함. 전문위원과 실무 인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위원회 특성상 관련기관에 유경험자와 관심을 많이 가진 위원들로 구성해서 활성화 되도록 함이 필요함.
3. 언론홍보위원회가 총회 공보실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제102회 총회 감사(정기) 특별위원회 지적사항

■ 예산심의위원회

□ 지적사항

1. 지적사항없음.

■ 헌법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

□ 지적사항

1. 헌법위원회 연장케 됨은 제102회 총회에서 신중해야 했음을 지적 설립준비위원회로 변경 허락은 본회 확인해야 했을 것.
2. 본 위원회가 공청회를 지역별로 진행함은 업무를 벗어난 일로 예산 낭비하는 행사로 사료됨 (참석자 저조하고, 관심이 없는 행사로 지남)
3. 본 위원회는 예산보다 150% 추경은 어떤 근거로 허락 된 것인지 명확히 답변이 필요하다.
4. 본 위원회는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될 것이 우려됨.
5. 위원회 회의 내용은 검토한 결과 헌법, 규칙, 운영규정 등 총회에서 위임하지 않는 모든 부분에 터치함은 월권임.
6. 감사부는 본위원회 감사결과 헌법에 굴립 할 수 있고, 재판국의 고유권한을 침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103회 총회에서 폐지 할 것을 요청함.

■ 장학재단설립위원회

□ 지적사항

1. 장학재단이 속히 설립될수 있도록 기금확보 방안과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

■ 칼빈기념사업위원회

□ 지적사항

1. 다음세대를 살리고 목회자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참된장로교인”, “쉽게 풀어 쓴 참된 장로교인”, “만화로 보는 참된 장로교인”을 보급하여 그 수익금을 수입 처리하였으며,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음.
2. 새로운 사업으로 “신학적 용어 설명이 담긴 신학서적”을 제작키로 하고 그 재정 일천팔백만원을 청원하였으나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추가 경정예산을 책정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헌법개정위원회

□ 지적사항

1. 위원회의 활동을 종결하도록 할 것.

■ 총회백서발간위원회

□ 지적사항

1. 예산지원이 전혀 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
2. 총회 시 사업보고하면서 예산안을 재정부로 넘긴 것 까지 결의 되었는데, 사업예산이 재정부 총회예산에 누락된 것은 큰 문제임.
3. 총회에서 만들어준 위원회이기에 큰 예산집행이 안되는 부분의 사업적인 부분으로 교수 섭외 등 진행 된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음.
4. 총회 정책위원회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 정책위원회와 연석회의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

□ 지적사항

1. 자체예산 조달로 설명회 및 책자 인쇄하여 배포하여 활동을 잘 하였음.
2. 차후로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봄.
3. 기재부 담당자와 연락 및 김진표 국회의원에게 감사장을 잘 전달함.
4.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를 위한 내용도 추가하여 활동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하기 바람.

■ 총회장상포상위원회

□ 지적사항

1. 시상자 후보들에 대한 개별 면담을 통한 확인 등을 한 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짐
2. 단체상의 경우도 현장 방문 및 확인이 필요함
3. 총회장의 개인 지명 건은 가급적 지양하고 만약 지명 시 복수 이상의 공천에서 선별하는 것이 필요함.
4. 시상자 및 시상내역등을 폭 넓게 홍보한 후에 후보자를 받아서 선별 할 것을 건의함.

■ 개혁사상 부흥운동위원회

□ 지적사항

1. 개혁사상부흥운동회는 취지와 방향은 너무 좋으나 그 출발점에 문제가 있다. 총회가 결의해 주었기에 시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총회는 반드시 헌의안만 다루워야만 한 것이지, 임원회가 발의하여 결의를 돌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산서노회조사처리위원회

□ 지적사항

1. 제14차 회의를 통하여 많은 조사를 하였는데, 총회 전 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총회산하기관 정관개정연구위원회

□ 지적사항

1. 첫 회의 시 총회에서 수임한 헌의안을 확인하여 위원회 목적과 방향을 세운 것은 잘 된 것이나, 미제출 기관(총신대)에 대한 더 적극적인 절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주요 장로교단 신학교와의 정관 등을 비교 검토한 것은 잘되었고, 총신대가 교단 직할 신학교로 할 수 있는 정관안이 부족함.

■ 교회실사 후속처리위원회

□ 지적사항

1. 회의 시 헌의안을 확인하여 위원회 업무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함.
2. 회의록에 21개 노회가 실사 대상 노회라 되어 있는데, 대상노회가 회의록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주보확인 후 현장 실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없기에 구체적으로 철저히 실사하기 바람.

■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업개발 위원회

□ 지적사항

1. 여성사역지위향상을 위해 사역개발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존속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2. 여성사역자들이 총신대학원을 졸업해도 갖춘 자질과 실력에 비해 진출할 진로가 한정되어 있다. 총신을 졸업한 졸업생들에게 강도사 고시에 버금가는 고시를 보게해서 합격한 분들에게 직분(예:교육사)을 주어서 교육전임이나 상담전임, 심방전임으로 사역하게 함이 좋을듯 함.
3. 여성사역자들이 소속이 없어 총회 소속감이 없고 총회에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고시에 합격한 여성사역자들은 노회소속으로 하여 관리함이 좋을듯 함.

■ 총회회관신축준비위원회

□ 지적사항

1.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서는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총회기관의 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는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안전 등 기초적인 면에서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3.1운동 100주년 기념준비위원회

□ 지적사항

1. 본 교단은 한국 최대의 교단이므로 노회나 총회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정부의 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 되었으면 좋겠음.

■ 은급재단(납골당)조사처리위원회

□ 지적사항

1. 조사처리위원회의 관계는 사안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그 자체에 한계를 느끼므로 이번 기회에 안전종결 하는 것이 옳타고 사료됨.
2. 미래 지향적인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처리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3. 납골당 문제는 총회차원에서 책임을 느끼고 손실금액 60억원에 대해 일정금액을 변제하여 가입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회복하고 전국교회에서 더 많이 가입 할 수 있도록 장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되어 짐.
4. 현재의 은급가금액 290억원이 있는 것을 총회총대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납골당과는 관계없이 관리가 잘 되고 있고 퇴임한 연금가입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잘 지급되고 있고, 관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권유함.
5. 현재도 총회에서 매년 1억5천만원이 은급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가입자들은 장기간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홍보하도록 권유함.
6. 위 사항을 참고하여 은급재단(납골당)조사처리위원회는 납골당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제103회 총회에 보고토록 할 것을 권유함.

■ 장학재단설립위원회

□ 지적사항

1. 장학재단 설립 시 필요한 비용(출연금 및 부대 비용)을 총회 예산에 반영하여 배정해야 할 것임

■ 교정선교위원회

□ 지적사항

1. 재소사들에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할 것.
2. 총회적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으로 갇힌자를 돕고 실천하여 총회 위상을 높여야 할 것.

■ 경찰선교회

□ 지적사항

1. 현재 4명의 경목후보생들의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 마련이 필요.
2. 경목후보생들의 지원을 5년마다 재심토록 규정을 마련이 필요.
3. 경목수련회는 현장의 경목들의 참석 위주로 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수련회가 되도록 개최 요망.
4. 3명의 경목후보생(신학생)의 목사 안수 후에 대책을 마련이 필요함.
5. 경목사업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함.

■ 이만교회운동본부

□ 지적사항

1. 교회 개척자금 지원 교회를 잘 선정한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지원금 사용한 확인을 할 수 없음.
2. 지원한 교회가 계속 존속하는지, 성장하는지 자료가 필요.

3. 지원금이 큰 힘을 주어 교회를 세우는 점은 인정하나 이만교회에서 전적으로 세운 교회도 1년에 1-2교회라도 있으면 함.

■ 학원선교위원회

□ 지적사항

1. 학생지도부가 학원선교를 위해 사역하고 있으니 학원선교위원회는 학생지도부에 통합하고,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

□ 지적사항

1.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 관련 헌의안(서경노회 심시용 씨가 헌의한 제97회 총회 결의대로 성석교회를 서경노회로 복귀처리의 건)과 정치부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보고(서경노회 복귀청원의 건)는 헌의안 내용과 정치부 보고 내용이 97회 결의와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 조직의 목적과 원 취지가 잘 못 된 것임.
2. 정치부 보고 175번은 97회 총회 결의에 의거 성석교회를 서경노회로 복귀해달라는 헌의였던바 97회 결의는 제명된 회원 복권에 관한 건이고, 교회 복귀의 건이 아니기에 헌의취지 내용과 다른 정치부 보고는 잘못된 것임.
3. 정치부 보고 시 175번은 헌의부에서 넘겨준 사실이 없고, 유인물에서 삭제 된 구두보고는 잘못된 것임.
4. 정치부보고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총회석상에서 보고 할 때“성석교회 복귀청원의건”을 “서경노회복귀청원의건으로 잘못 보고함으로 더욱 문제가 있음.

■ 서광주전남제일노회합병위원회

□ 지적사항

1. 정치부 보고 유인물과 총회 현장 보고 시 내용이 다른 변조 보고된 것은 잘못되었고, 총회에서 합병을 하라고 하였는데, 오히려 삼등분으로 갈라지는 현상으로 되었기에 제103회 총회에서 특별조사처리위원회를 내어서 신중하게 처리함이 가한 줄 암.
2. 합병위원회 위원에게 금품수수에 대한 제보가 감사부로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불응하고, 감사부를 적대한 행위에 대하여 제103회 총회 현장에서 특별 보고하기로 함.

제102회 총회 감사(정기) 산하 속회 지적사항

■ 전국남전도연합회

□ 지적사항

1. 남전도회 명칭에 맞게 국내전도에 주력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기를 요함.
2. 회기가 바뀌면서 재정장부(회계) 서류가 전혀 이관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연합기관 불신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적함.
3. 해외 교회 설립, 건축하는 것은 칭찬할 일이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므로 현장 선택과 관리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신중하길 지적함.
4. 총회 세례교인헌금 적극 동참키로 결의 후 순회헌신예배를 금지결의 한 바 세례교인헌금으로 남전도회를 지원하고 순회예배는 총회결의대로 시행토록 해야함.
5. 37회기 현재 차기회장 후보 관련 소문이 난무함으로 규정과 원칙에 따라 시행하되 섬김의 자세로 남전도회가 운영되도록 지적함.

■ 기독청장년면려회

□ 지적사항

1. 총회산하 기독청장년면려회(전국C.E.)의 연령은 만 50세 까지로 결의하였으나, 각 노회에서 지켜지지 아니하므로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자유스럽게 활동 하도록 하는 것이 총회 결의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필요하기에 총회에 건의하기로 권고하다.
2. 제28차 세계C.E. 참가를 전년도 회원국으로써 참가하도록 지적하였으나 재정적인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다. 총회에 8,500만원을 청원하였으나 전혀 배정받지 못하였는바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줄로 사료됨.

■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 지적사항

1. 임역원 회비 납부율이 저조함
2. 주일학교연합회의 특성상 총회예산 증액 필요
3. 여행사 선정 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진행 할 것.
4.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찬양율동대학을 더욱 발전시키고, 졸업생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졸업식을 성경통신대학, 교사통신대학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수료증과 자격증을 총회장의 명의로 수여해서 운영하는 것이 주교연합회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사료됨.

■ 전국여전도연합회

□ 지적사항

1. 중간 감사 시 지적사항 중 총무에 대한 사항은 전혀 시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음. 도리어 6월 월례회에서 총무 재신임을 가결함.
2. 회칙수정을 지시했는데 9월 총회에서 회칙 수정을 상정하기로 함.

3. 총무 문제와 회칙문제를 103회기 내에 해결한다는 총무의 각서를 지시함.
4. 만약 각서가 오지 않을 경우 총회에서 현장보고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2018.8.10.(금)까지 제출하기로 함)

제102회 총회 감사(정기) 총회본부 지적사항

■ 기획행정국

□ 지적사항

1. 인사고과 및 직원채용의 기준이 더 명확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이루도록 해야 함
2. 문서접수는 헌법대로 시행할 것(노회를 경유하거나 부전지 첨부)
3. 시행세칙을 정비할 것
4. 총회본부 구조가 편제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전도를 중점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함.
5. 인사위원회는 더 투명하게 운영하고 회의록은 반드시 남기도록 할 것(인사위원회 구성은 5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각 실국의 사업을 위한 계약직 채용이라도 제5조 4항에 의거 총무가 임용하되 인사카드와 신상자료는 기획행정실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7. 직원들 배정 시 활용방안이 나와야 함
 -어려운 부서는 순환보직 또는 인사 인센티브가 있어야 함.
 -구조 편재상 목사가 적절한 업무와 평신도가 적절한 업무가 있어야 함.
 -직원들의 개인 적성과 특기대로 업무를 맡겨야 함.
8. 인사고과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함.(고과 기준 - 평점, 내신, 점수제 등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있어야 함.)
9. 결재서류에 업무에 알맞게 결재가 이루어져야 함.(국장, 총무, 총회장)
10. 외근대장 작성 할 것
11. 출장명령서에 시간 명시할 것
12. 전도법인국은 법인으로 오해소지가 있기에 전도국과 법인국이 분리되어야 함.

〈재무과〉

1. 재정지출 규정이 세부적으로 필요함.(선교사 방문 등)
2.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함.
3. 법인카드사용 매뉴얼이 필요(사용자격과 시간, 내용)하고 사용대장에 기록되어야 함.
4. 영수 처리 시 누구와 어떤 일로 몇 명이 먹었는지 영수증에 명시 필요함.
5. 재정전표에 원본 영수증은 기간이 지나고 지워질 수 있도록 사본을 복사하여 보관할 것.

■ 교육출판국(교육진흥원)

□ 지적사항

1. 원구원의 충분한 확보와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2. 교재 집필 시 교단신학, 성경가치 등 장점은 더욱 살리고, 연령대에 맞는 문화와 도구를 사용하여 더욱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 집필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보고하도록 할 것.
3. '생명의 빛' 현재 공과를 대체할 새로운 공과 집필 계획을 제출 할 것.
4. 계절별 성경캠프를 위한 교재를 개발하도록 할 것

5. 교육진흥국 연구진과 직원은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하지 말 것(최소한 5년을 보장하도록)

■ 교육출판국(출판)

□ 지적사항

1. 출판국 영업파트에 대한 자료가 부족함(서점별 도서현황, 영업판매 결과 등)
2. 예산 지출 내역 중 경조비 예산은 직원 경조관련 예산이지만 거래처 등 경조비 지출은 영업비에 해당되기에 맞지 않은 항복 지출임.

■ 전도법인국(전도)

□ 지적사항

1. 경조비에 직원경조비가 아니라 교정선교회 임원의 경조사에 경조비를 지출하고 있는바 차후에는 시정되어야 할 것.
2. 전도법인국은 법인국에 맞도록 업무를 진행할 것
3. 전도법인국이라는 호칭은 분리하여 사용할 것

제102회 총회 감사(정기) 세계선교회 지적사항

■ 세계선교회 행정국

□ 지적사항

1. 지난 중간감사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재차 시정을 요함.
   ① 임원회에 명예 이사장이 참석(규정 p13.)은 자문 요청 시 참석이 아닌 것은 불가하므로 규정 수정 요함
   ② 임원회에(규정 p.13) 별도 총무를 임원으로 두고 참석함은 불가함으로 규정 수정 요함. 현재 설교, 본부 총무가 존재하는바 별도 총무를 둘 이유가 없으므로 부적절하고 매 임원회 참석으로 부비에 효율성도 떨어짐.
   ③ 선거관리규정 제2장 제4설 '정년 전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직전이사장"1인으로 수정요함
   ④ 정관 제3장 7절 5항 전문위원을 'GMS이사 임원들을 전원 제외하고 선임하라'로 수정요함 -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결정 된 바를 전문위원에 들어가 설명하고 진행하면 창의적인 전문위원 활동이 위축됨
   ⑤ 이사회와 GMS행정을 이원화 할 것. 운영규칙 제1장 제3절 5항 본부조직표에 이사회는 후원회로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2. 정관 제2장 제6절 1항 4) 명예 이사장이 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자문 요청시 참석'으로 수정할 것.
3. 정관 제2장 제6절 2항 9) 총무를 임원으로 두고 본부 업무를 관할하게 하고, 임원회에 참석함은 불가하므로 정관 수정 요함. (현재 본부총무, 선교총무로 선출하여 임원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도록 구조가 되어있으므로, 별도 임원회 총무를 둘 사유가 없으므로 부적절하고 매 임원회 참석으로 부비 효율성도 떨어진다.)
4. 은퇴선교사 현황 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료화 할 것
   ① 은퇴했으나 아직 현지에 있는 선교사(이유, 인원)
   ② 은퇴하고 국내에 체류중인 선교사(상황, 인원)
5. LMTC수료자 현황 파악을 데이터화 할 것
   ※선교사 파송 현황 : ① 교회 파송인원 ② 타기관에서 파송 ③ 기타
6. 평신도 선교사 파송 및 사역에 대한 규정은 수정 및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평신도들의 선교 동력이 일어나도록 할 것
7. 선교지 재산관리에 대하여 이제부터 인준받은 선교사로 시작으로 GMS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신설하여 운영할 것(현재 선교지 재산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바 GMS는 이러한 문제로 예방하고, 해결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때 주파송교회에 대해서도 선교지 재산은 분명한 확약을 받아야 한다)
8. 주후원 교회로부터 파송 중지가 된 선교사 동향 파악할 것
9. 추방 선교사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대한 전략은 수립하여 선교사 재배치 등과 같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10. 선교지 현장 사역지도 및 지역 위원회 행사는 선교총무의 직임과 역할이므로 수행하도록 하여 위상을 세워주고, 이사장은 선교대회와 같은 전체 행사에 대해서만 역할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이사회에 정확한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이 기록되어야 함.

12. 회의록에 이사장, 서기 확인 서명이 없다. 회의록 작성을 수기로 작성하거나 회의장에서 실시간으로 타이핑쳐서 모든 이사들에게 확인하여 기록해야 함.
13.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이사회 임원들로 구성되어있고 실제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하는 본부총무와 각 국장들은 배제되어 올바른 인사고과가 어렵다고 사료됨.
14. 직원인사에 관련하여 적절한 매뉴얼이 없고 채점기준 등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인사위원들 전체위원에게 인사자료가 공유되어 각자 채점을 하고, 매뉴얼대로 함으로 편견없이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 져야 함.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함.

■ 세계선교회 훈련국

□ 지적사항

1. 계속 교육이 연간 상설적으로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이 본부나 전역별로 시행되도록 체계화 시키고 집중시킬 방안을 연구할 것.
   1) 직원 2) 재정을 확보하도록
2. OMTC를 본부 산하 LMTC와 동일하게 질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훈련, 인준과정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것
3. 정규과정 특별과정 할 것 없이 최근 5년은 20~30%훈련생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광고하고 찾아오는 훈련생만 받을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교후보생을 찾고 발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고하시오
4. 식당 외주 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 계약갱신 또는 타업체로 변경 할 것.
   ① 최초계약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므로
   ② 1인 1식비가 인건비 보조금 포함하여 8천원선 상회하므로 재고 바람

■ 세계선교회 선교국

□ 지적사항

1. 선교국의 책임성 있는 역할이 필요함.
2. 북미, 미주 선교사 중에 OMTC훈련으로 장기선교사 임명하는 일은 분명 시정이 필요하며 (단기선교사로만 가능) 가정(unit) 부부 중에 남편만 훈련받고 부부가 선교사 되는 일은 불가능함에도 선교사 임명하는 것 시정을 요합니다.
3. 선교사로 파송받은 GMS본부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분명 시정을 요하며 특별히 북미선교사들은 의무를 전혀 하지않는 상태에서 계속 멤버십을 주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4. 선교대회에 의결도 없이 재정 집행하는 것은 잘못임. TF팀 수고는 인정하나 선교사 후원금, 사례금, 회의비, 실사비, 간식비를 지출하는 것은 선교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분명 잘못된 것임.

■ 세계선교회 재정복지국

□ 지적사항

1. 재단이사장 해외 출장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
2. 선교대회 호텔예약시 브로커를 통해 5,000만원이 추가 지출 됨.
3. 실버 적립금 소송 137억을 철저히 대비 할 것.
4. 총회 지원비를 2억으로 상향 할 것.

5. 선교사 회비 미지급 선교사를 잘 독려 할 것.
6. 이사장 활동에 비해 결과과가 전무함.
7. 각 재정, 기금, 연금 이자관리를 잘할 것.

■ 세계선교회 사회복지재단(요양원)

□ 지적사항

1. 식자재 업체 등 위탁업체에 대한 검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생과 건강에 더욱 힘쓸 것.
2. 요양원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보수교체가 필요하며, 온수탱크 및 방수는 근본적으로 우선 해결 할 것.
3.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감사 섭외를 할 것.
4.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 60일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송 진행 중인건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복지재단 요양원의 미지급금으로 인한 행정적, 구조적, 재정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정상화 할 것.
5. GMS본부는 요양원 미지급금을 신속히 지원하여서 정상화를 도와줄 것.

■ 세계선교회 (2018 선교대회)

1. 행사 결재라인이 두 개였고, 실무직원 활용을 잘 하지 못함.
2. 행사이후 수고한 직원에 대한 포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3.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진행된 부분이 많음.
4. 품의를 하여 내부결재를 통해 재정이 지출해야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음.
5. 선교대회 후에 선교 보고서가 미흡함.
   - 선교백서 제작 시 공시지가로 공개입찰을 하여 선정하고, 계약할 것.
6. 호텔 사용에 있어서 계약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워 진행하다보니, 행사 시 호텔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 요구하여 더 높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됨.
7. 숙소 배정 시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8. TF팀의 준비 절차가 미흡함. TF팀 사역을 매일 점검 하지 않고, 업무분장과 조율 등이 미흡하여 TF팀 선교사들과 직원간의 조화가 부족하게 됨.
9. 선교대회 TF팀이 준비를 하다 실행팀으로 전환하는 것이 부족함.
10. 7년차 이상의 선교사들이 참석해야하나 자격 없는 선교사가 참석 함.
11. 선교대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선교사 대회가 아닌 선교대회가 되게 해야 함.

제102회 총회 감사(정기) 총평

1. 총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선정하는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위원회 조직 시 헌의안 내용과 정치부 보고안이 제대로 파악하여 감사 시 필히 수검표에 첨부 할 것.

2. 특별위원회는 규칙에 따라 5인으로 할 것.

청 원 서

수신 : 총 회 장
참조 : 서기 및 재정부장
제목 : 재정청원

아래와 같이 감사부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청원사항 : 감사부 7,000만원 재정청원
2. 청원취지 :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강사를 통한 세미나와 중요한 사항의 미진 부서 감사 등을 위한 외부 감사 시행을 위하여 재청청원을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감 사 부
부 장 라 상 기
서 기 최 병 철
회 계 임 종 환